

자산보관 •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를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36/0991

2015. 07. 10	신규	이정환	1994년 12월~1999년 7월 동원증권 2000년 2월~2002년 4월 키움닷컴증권 리서치센터 2002년 5월~2005년 10월 동부투신운용 시 팀 2005년 11월~ 현재 삼성자산운용	2109000465
--------------	----	-----	--	------------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KODEX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- 나. 집합투자기구분류: 증권집합투자기구(주식-파생형)
- 다. 보관 •관리기간: 2015.01.01 - 2015.12.31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NH투자증권, 현대증권, SK증권, 삼성증권, 동부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크레디트스위스증권, 골드만삭스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키움증권, 리딩투자증권, 하나금융투자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5. 02. 24	문구명확화 제 38 조	①~② 생략 추가	①~② 생략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2항 각호의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하고, 당해 보수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신탁업자에 당해 투자신탁보수를 신탁재산에서 인출할 것을 지시한다.(~)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<http://dart.fss.or.kr> 을 통해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자	변경사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호
2015. 04. 30	말소	정승호	2004년 1월~2007년 12월 SK텔레콤 재무관리실 2008년 1월~2012년 2월 삼성자산운용 글로벌투자팀 2012년 3월~2014년 1월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 2014년 2월~2014년 9월 삼성자산운용 Passive 솔루션팀 2014년 10월~현재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	2110000108
2015. 04. 30	신규	김남의	2007년 8월~현재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	2110000109
2015. 07. 10	말소	김남의	2007년 8월~현재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	2110000109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- 해당사항 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- 해당사항 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550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- 해당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• 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- 해당사항 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대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